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44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신성범 · 최수진 · 조은희
김예지 · 박덕흠 · 서천호
김용태 · 김위상 · 이성권
임이자 · 진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여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 중 “주요행사 등”을 “주요행사 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함은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추가적인 가입료 그 밖의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통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을 “국민관심행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방송통신서비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를 말한다)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편적 방송수단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6조의3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재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통신사업자에 차별적인 재판매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3의4.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저해할 목적으로 중계방송권의 권리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실시간 중계 또는 뉴스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적 또는 계약상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3의5. 중계방송권을 재판매하는 조건으로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

1. 금지행위의 중지

2.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 중계신호의 제공

3. 중계조건의 변경

4. 실시간 중계의 이행

5.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화면의 제공

6.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치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4(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 계약을 위한 공동협상단) ①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은 다음 각 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상단(이하 “공동협상단”이라 한다)이 구매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1. 판매자가 중계방송권의 공동 구매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중계방송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금액인 경우

3. 그 밖에 중계방송권 협상·입찰 기한이 촉박한 등의 사유로 공동협상단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③ 공동협상단은 제1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협의로 구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동협상단이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구성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동협상단은 국민관심행사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계방송권 구매 계약의 체결
2. 중계방송권 구매 대금의 지급
3. 중계방송에 필요한 국제신호의 수신
4. 중계방송의 공동 제작
5. 중계방송 관련 권리의 관리
6. 중계방송권의 재판매(방송통신사업자별 재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⑤ 공동협상단에 의한 중계방송권의 공동 구매 및 재판매 행위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국민관심행사등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상품·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동협상단은 중계방송권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 계약의 주요 내용

2. 중계방송권의 범위, 독점 취득 여부 및 재판매 제한 여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계방송권 구매 계약조건의 변경·보완 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관심행사등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척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대회 그 밖의 <u>주요행사</u>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5. ----- ----- ----- <u>주요행사</u> <u>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u> ----- ----- -----.
<신 설>	25의2.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함은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추가적인 가입료 그 밖의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통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을 말한다)을 말한다.
26. · 27. (생 략)	26. · 27. (현행과 같음)
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생 략)	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② -----

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국민관심행사등을-----
-----,

-----.

③ -----

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송통신서비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를 말한다)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④ (생략)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신설>	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편적 방송수단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 -----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
---	--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4. (생 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u>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 이	<u>송권의 재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u> 3의3. <u>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통신사업자에 차별적인 재판매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u> 3의4. <u>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저해할 목적으로 중계방송권의 권리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실시간 중계 또는 뉴스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적 또는 계약상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u> 3의5. <u>중계방송권을 재판매하는 조건으로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u> 4. (현행과 같음) ②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	--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략)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
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
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

-----.

1. 금지행위의 중지

2.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 중계신호의 제공

3. 중계조건의 변경

4. 실시간 중계의 이행

5.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화면의 제공

6.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신속하게 해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치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4(국민관심행사등의 중
계방송권 계약을 위한 공동협
상단) ① 국민관심행사등에 대
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
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

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은 다음 각 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상단(이하 “공동협상단”이라 한다)이 구매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1. 판매자가 중계방송권의 공동구매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중계방송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금액인 경우

3. 그 밖에 중계방송권 협상·

입찰 기한이 촉박한 등의 사유로 공동협상단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③ 공동협상단은 제1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협의로 구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동협상단이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구성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동협상단은 국민관심행사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계방송권 구매 계약의 체결
2. 중계방송권 구매 대금의 지급
3. 중계방송에 필요한 국제신호의 수신
4. 중계방송의 공동 제작
5. 중계방송 관련 권리의 관리
6. 중계방송권의 재판매(방송통신사업자별 재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⑤ 공동협상단에 의한 중계방

송권의 공동 구매 및 재판매 행위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국민관심행사등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상품·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동협상단은 중계방송권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 계약의 주요 내용
2. 중계방송권의 범위, 독점 취득 여부 및 재판매 제한 여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계방송권 구매 계약조건의 변경·

<u>보완 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u>
